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물순환 시설(안 제2조)

- 법에서 규정한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하수도, 수자원 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등 시설 외에 농업 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시설을 추가 규정함

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안 제3조~5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기본 방침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함

다.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고시 등(안 제6조~제11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고시방법, 의견 청취, 지정·변경 제안 절차 등 규정

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관련 사항(안 제12조~제15조, 제18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사항과 고시방법 등의 절차 규정

마. 실태조사(안 제17조)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을 규정

바.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제20조)

- 사업시행자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설
2.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에 따른 시설 및 관련 부지 등을 활용하여 친수 이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관련 부지 등에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4. 계측기, 통신설비 등 물순환 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사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물순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3.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에 필요한 물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국토·산업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향
5.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6. 물순환 촉진 시책의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

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물순환 취약성에 대한 평가(이하 “물순환 취약성 평가”라고 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 취약성 평가등급이 I 등급인 경우가 1개 이상인 지역
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물순환 취약성이 I 등급 또는 II 등급인 지역

② 물순환 취약성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본법」 제9조의 건전한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2. 가뭄, 용수공급 시설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한 물이용 취약성
3. 홍수, 내수침수 등 물재해 취약성
4. 기후변화,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물환경 취약성

③ 물순환 취약성 평가방법,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 물순환 촉진 정책에 부합할 것
2. 해당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물순환 촉진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큰 것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변경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증감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유 변경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되는 위치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제안 전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역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을 제안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계획의 개요
3.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제안 사유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이 영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제안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물순환 촉진사업 내용을 포함한 물순환촉진 기본구상
5. 물순환촉진 기본구상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 물순환 시설 등 일반현황
2.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물순환 촉진구역의 물순환 취약성 평가 결과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자료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자료

3.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에 관한 자료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에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자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된 물순환 촉진사업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2.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된 물순환 촉진사업의 총사업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6.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취소일자
2. 취소사유
3. 해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나무의 벌채 및 식재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제17조(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순환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

3. 물순환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물순환 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재정투자 상황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물순환 실태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5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물순환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실태조사를물관리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상 계획
2. 제출 자료
3. 평가 지표
4.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환경부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이라 한다)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면적 증감
2.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4. 총사업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순환촉진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해당 현황(법 제14조제2항에 따

른 사업 여부를 포함한다)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영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조정을 말한다.

제22조(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우선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국고 보조)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중

합계획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다음 각 호의 사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이에 관한 법 제8조제6항의 변경고시
2. 법 제10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을 위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취소의 협의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자의 확인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승인·변경 및 승인·변경 후 고시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 인증기준개발 업무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제27조(과태료부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제6조제1항 관련)

1. 물순환 취약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대한 개별 및 종합 물순환 취약성을 도출하는 평가 체계를 말한다.
가. 물순환 왜곡도
나. 물이용 취약성
다. 물재해 취약성
라. 물환경 취약성
2. 개별 물순환 취약성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취약성을 각각 평가한 것으로, I등급에서 V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때 I등급이 가장 취약하며, 평가를 위한 항목 및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 물순환 왜곡도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 달성률을 기준으로 I등급에서 V등급으로 평가
나. 물이용 취약성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안전도와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IPCC 기후시나리오”라 한다)를 반영한 이수안전도를 기준으로 I등급에서 V등급으로 평가
다. 물재해 취약성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와 IPCC 기후시나리오를 반영한 치수안전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내수재해위험지구 선정 비율과 같은 법 제16조의4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중 기후변화 할증율을 기준으로 I등급에서 V등급으로 평가
라. 물환경 취약성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하천환경자연도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제1항에 근거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해 얻어진 수질 및 수생태 취약성을 기준으로 I등급에서 V등급으로 평가

비고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점수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I등급, 4점 미만 3점 이상인 경우 II등급, 3점 미만 2점 이상인 경우 III등급, 2점 미만 1점 이상인 경우 IV등급, 1점 미만인 경우 V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I등급이 가장 취약하다.

$$\text{종합 물순환 취약성 점수} = \sum_{i=1}^4 (0.25 \times \text{개별 물순환 취약성 점수})$$

비고 : 개별 물순환 취약성 점수는 제2호에 따른 개별 물순환 취약성이 I등급인 경우 5점, II등급인 경우 4점, III등급인 경우 3점, IV등급인 경우 2점, V등급인 경우 1점으로 한다.

4. 제6조제1항의 “물순환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별 물순환 취약성 중 I 등급이 1개 이상인 지역
- 나.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I 등급 또는 II등급인 지역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경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300	4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146